

宋潤錫	金星煥	朴炷緒
李天揆	李鍾萬	李奉衡
具又石	韓賢惠	金鍾烈
沈載昶	洪性煥	俞南烈
金汶泰	李宗一	鄭然宇
金相烈	李康泌	金東暉
蔡雲錫	尹東鉉	洪吉杓
田炳萬	李仁求	尹正鏞
金裕顯	尹明奎	權五範

○出席公務員

區廳長	曹三燮
副區廳長	金玄宗
總務局長	河永基
財務局長	文忠實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林東南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課長	李春基
企劃豫算課長	李殷圭
土木課長	李相煥

(參照)

구정질문 서면답변

○질문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질문내용: 지역개발에 관하여

○답변내용:

○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재정비계획)수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같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5개부도심인 청량리, 영등포, 신촌, 영동, 잠실 등에 대하여 90년 5월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하여 지역특성, 현장여건 등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용역결과를 발주처인 서울시에 제출하여 1992. 12. 29 용역 준공되어 청량리, 영등포는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촌지역은 유보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청량리, 영등포지역은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신촌 부도심은 유보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중에 있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5년 2월말 확정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상업지역의 확대 또는 축소 등은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대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미래상 정립과 기능적이고 편리한 마포구 건설을 목표로 하여 포구문화에서 주거문화를 거쳐 첨단 정보업무 문화로의 도약이란 미래상 구현과 각 권역별 특성을 살린 조화된 마포구 건설,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불편이 없는 마포구 건설, 생활 및 문화환경이 개선된 아름다운 마포구 건설을 우리 구의 계획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신촌 부도심과, 아현, 공덕, 서교, 합정, 수색 등 5개 지구중심이 입지하고 있어 조화된 마포구 건설을 위해 지역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현권, 공덕권, 신촌권, 합정권, 성산권, 상암권 등 6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전철망과 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을 살려 개발할 계획이며,

○ 전철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할 아현권은 도심의 관문으로 인접 서대문구, 용산구와 연계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촌로변은 전문상가 형성을 유도하고 아현

역과 애오개역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생활권 중심의 기능과 근린상업의 성격 을 갖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공덕권은 공덕역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등 복합기능을 부여하여 공덕동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마포역을 연계한 지하상가를 개발하여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업무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상업의 중심지이며 위락성격을 띠고있는 신촌권은 서울의 5개 부도심중의 하나로 서대문구와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로타리를 중심으로 지하보도 및 광장의 설치를 유도하여 공간이용을 입체화 할 계획이며, 문화기능과 상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하여 신공향선 서강역사를 민자유치하여 서울의 부도심으로 키워나 갈 계획입니다.
- 합정권은 합정지구 중심을 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형성하도록 하고 영등포와 서대문을 연결하는 관문적 입지로 서교지구 중심과 연결하여 연결되는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폐철도 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신촌권과 같이 계획적 개발을 유도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성산권은 생활권 형성을 위한 정비와 함께 행정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여 노후 연립주택은 자력정비를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상암권은 수색지구 중심이 입지 되어 있어 인접 은평구와 연계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광역차원에서 서울시의 개발방향과 접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유 보시켰으나 서울시에서는 상암동 일대를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95년 10월까지 개발기준계획을 수립하고 96년 말까지 수색역 주변에 대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97년 이후 사업에 착 수할 예정이며, 개발방향으로는 남북교류 기능과 첨단정보업무단지, 교통 물류기능, 관광 문화기능, 배후주거기능을 배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면적은 168만평이고 개발 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마포구는 포구문화에서 주거문화를 거쳐 첨단정보업무문화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화된 마포구, 교통불편이 없는 마포구 건설, 아름다운 마포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 질문요지 : 마포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포구내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유치함이 바람직한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업 구상이라도 갖고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효율적인 행정수 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문제인데, 우리 구의 94년도 재정자립도는 54.35%이고 '95년도에는 1.49% 증가한 55.84%로 점차 자립도가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여러가지 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도시 기본계획으로 6개 개발권역을 설정, 권역 별 특성에 따라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현권은 전문상가 형성을 유도하여 근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공덕권은 상업기능 및 복합업무 기능을 부여하며, 신촌권은 서대문구와 연계개발하여 상업 및 문화기 능이 조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정권과 성산권은 생활과 행정기능을 중

심으로 개발하고, 끝으로 상암권은 교통, 정보, 관광기능을 배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난지도 매립지의 안정화 작업 2단계로 물류센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권역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세수가 증대되어 재정자립도도 높아져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농수산물유통센타 유치사안에 있어서는 망원동 우수지를 복개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요지의 민원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시 단위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질문요지**: 재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답변내용**

- 심재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구내 재개발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현재개발구역을 비롯하여 10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구역지정 계류중인 것이 2개구역이 있으며
- 구역지정된 면적은 521.188㎡이며, 전체 아파트 건립규모는 9,901세대가 되겠으며
- 재개발사업의 소요기간은 구역지정 이후 공사준공기한까지 약 6~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 사업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다수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 주민의 의견규합과 사업성 검토등이 사실상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사업인가후에는 기존건물의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세입자의 퇴거저항은 사업지연의 최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3. 5. 19일 사업 시행인가된 도화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금까지도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질문요지**: 재건축이 부진한 사유

○**답변내용**

-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조의 2의 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건축을 하고자하면 먼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야 하고 이 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그 주택을 철거하고 동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재산증식 등을 위하여 타산에 맞을 경우, 전체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전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이런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 또는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등을 위한 층수 재조정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재심의 되기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주민동의율 80%가 사업승인시에는 동의율 90%,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100%의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산상 이해대립이 첨예하여 조합측에서 이들

미동 의자에 대한 설득 및 민사재판 강행 등으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됨으로 재건축사업이 부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질문요지 : 재개발사업기금 1,070억원을 시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기금의 반인 5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답변내용

- 심재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재개발사업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83년부터 94년까지 재개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1,0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도심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심지 재개발사업에만 이용되어 왔으며
-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개정하여 '95.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그 내용을 보면 기금 1,070억원의 반은 도심 재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반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사용 되겠습니다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세부사용 용도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매입과 사업구역내 공공시설 확보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구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된 임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흥재개발구역내 712세대를 비롯하여 1,816세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

○질문요지 : 마포구내에 위치한 교량 마포대교, 당산철교, 양화대교, 성산대교가 중량

을 이기지 못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4개의 교량을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기와 예산 그리고 서울시의 계획과 아울러 마포구내 육교는 몇개이며 안전점검이 100%되어 있는지?

○답변내용

1. 마포관내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 치유시기와 예산에 대하여

○ 한강을 연결하는 교량중 우리 관내에 마포, 양화, 성산대교 및 당산철교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후 국내외 전문기술자를 초빙 한강상 전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 마포대교는

* 교량상부중 교좌장치, 강재변형, 도장불량, 프레임거더 볼트이완 및 탈락, 체결 상판스라브 누수로 인한 백태현상 등은 보수가 가능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 보도치집구간(630M 양방향)에 대한 보수계획은 현재 용역실시중에 있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차량통과하중 DB 18 ton, 6차선인 교량을 총 940억원을 투자 DB 24 ton 10차선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 양화대교는

* 구교 교좌장치 결함의 37건, 신교 27건의 손상부위가 발견되어 95년 6월까지 보수완료할 예정이고

* 구교에 총 5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차량통과하중 DB 18 ton을 DB 24 ton으로 전면 개수공사 계획에 있음.

- 성산대교는

* 가동단 교좌장치 총 96개소중 34

개소가 탈락, 변형, 이탈되고 62개 소도 부식등 불량한 상태이며

- * 가동단 96개 전체를 중, 횡방향 변위를 받을 수 있는 POT BEARING 등으로 95. 3월부터 95. 6월까지 교체할 예정임.

- 당산철교는

- * 세로보, 브레이크, 볼트이완 및 탈락 등 120개소 불량으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2. 우리 구 관내 육교는 몇개이며 안전점검이 100%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 *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는 12개소로서 아현국교 및 구 경서중학교앞 2개소는 지하철5호선 준공시 철거예정이며, 소의국교 및 복지회관앞 보도육교 2개소는 본청 심의결과 철거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구 예산 확보되는대로 철거할 예정이며 재설치는 도로계획과 협의되는대로 재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12회 실시 총 112건 적출되어 61건은 자체보수 완료하고 51건은 관련기관에 보수의뢰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

○질문요지 : 공무원의 비리에 관하여 현재 주민들의 주시를 받고 있는 마포구청 직원은 있는지?

○답변내용

○ 94감사실시 현황

구분	신분상조치					비고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합계	244	29	9	88	118	
감사원	11	4		1	6	조치완료
본청	47	3	2	20	22	"
자체	186	22	7	67	90	"

○ 비리로 인하여 주민의 주시를 받고 있

는 공무원의 수는?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를 통하여 24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나, 비리로 인하여 외부 주민에게 주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없음.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

○질문요지 : 예산이 많이 출납되는 재무, 세무, 지역교통과 등에 이상유무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내용

○ 세입분야(세무1과, 지역교통과)

1. 각종 구수입은 시중은행등에 수납된 후 시중은행 본점으로부터 총괄일괄표 작성 후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시금고로 통보
2. 시금고는 세입금전급 명세 송달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징수부서(구청)로 통보
3. 세무1과에서는 송달서내역과 실물대사작업후 이상유·무를 확인후 현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청에 보고
4.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세입은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고자 94년도중 시본청 및 내무부 특별감사를 통하여 95,252천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95. 1. 5. 현재 추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세출분야(재무과)

1. 지출되는 각종예산은 마포구 지정은행(금고)과 매월 일치여부를 확인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2.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을 발부받아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본청비 및 국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고,
3. 자치구 예산에 대하여는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4. 출납폐쇄후에는 감사부서의 자체검사와 결산검사위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로서 지출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음

○질문의원: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

○질문요지: 마포구청의 모든 세금은 은행으로 통하여 징수하고 공무원 수를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내용

1. 자치구 세금징수 방법에 대하여
 - 우리 구 세금징수는 현재 모든 은행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 공무원 수의 감축에 대하여(세무직)
 - 우리 구는 94. 12. 31. 기준 세무행정 조사공무원의 내무부 인력산출 기초에 의하면 총 소요인원이 97명이나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2명으로 실질적으로 35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따라서 현재 정원의 감축은 불가한 편이나 전산화 작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력감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

○질문요지: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지역의 허가 및 사고경위와 피해자 보상 및 복구에 대하여 답변요구

○답변내용

아현동 사고지역 도시가스 공급기지는 관리주체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법에 의하여 감독기관인 동력자원부(현 통상산업부)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설치하였으며,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 장소를 시민생활 편의증진 및 가스 안정공급을 위하여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하여 구청에 지시하여 '91. 3. 18. 구청(공원녹지과)접용허가 하였음.

사고경위는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주)의 직원이 계기수정 작업중 밸브결함 및 작업수칙 이행소홀로 인한 발생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보상 및 복구

는 통상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 사항은 피해주민, 가스공사가 협의 결정 되어야 함.

○질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

○질문요지: 95. 6. 27. 실시되는 지방4대선거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답변내용

95. 6. 27.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대의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구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 운영

○ 금년 3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법이나 법 조항이 대단히 많고 까다로워 법률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으로 예상 94. 11. 7일부터 구·동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투표구 조정 및 투표소 확보

○ 4대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투표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기존의 선거 패와는 달리 투표시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구 조정을 위해 94. 11월부터 투표구 조정에 들어갔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선시 114개 투표구에서 134개로 1차 조정되었으나 계속 조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 충분한 면적의 투표소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로 현재 적합한 투표소를 확보하지 못한 13개 투표구에 대해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95. 3월까지의 투표구 조정 및 투표소 확보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94. 11. 29.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선거관리시연대회에 참여 문제 점을 도출 현재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3. 그리고 내년 4대선거는 그 업무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에 대비 내년도에 들어서는 선거업무 담당직원을 증원, 철저한 교육을 통해 4대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운동현의원

○ 질문요지 : 운전면허 시험장 길이 비교적 좁은데도 타구(중구, 용산구) 청소차고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청소차고를 내줄 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 답변내용

▣ 용산, 종로구 부지사용 승인 경위

- 93. 11. 24. 종로구 청소차고 사용 요청 (청소사업본부)
- 93. 12. 10. 용산구 청소차고 사용 요청 (청소사업본부)
- 94. 6. 15. 시의호 사용승인 가결
- 94. 6. 22. 종로, 용산구 청소차고 사용 승인(각 1,500평)

▣ 현재 사용현황

- 용산 청소차고 : 일일 청소차량 25대 출입, 적재함 35대 적치
- 종로 청소차고 : 청소차고로 승인된 부지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집하장 용도로 사용을 불허하여 현재부지 사용치 못하고 있음

▣ 타 구의 부지사용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

- 부지 사용허가 업무가 시에 일임되어 있어 승인 과정에서 우리구와 협의치 않았으므로 부지 사용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구에서는 본 사항을 파악치 못함

○ 부지 사용이 확정된 후, 타 구 청소차량의 빈번한 출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약 우려등을 난지도 관리사업소에 통보하였음

○ 질문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운동현의원

○ 질문요지 : 구청광장 주차문제에 관하여

○ 답변내용

○ 운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청광장 주차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 수용능력은 총 152대입니다. 그중 77대분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하였으며, 35대분은 행정차량으로 사실상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직원 보유차량 180대중 40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재천 복개지 현 사천고가 밑에 114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직원 50대, 민원인 및 인근주민 64대분의 주차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직원차량 90대분을 주차가능토록 하여 우리 구 직원들의 주차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직원들은 날로 늘어가는 차량 증가로 카풀제, 10부제 지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교통량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질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한천덕의원

○ 질문내용 : 도심지 재개발 구역내 소방서 이전 문제

○ 답변내용

○ 마포소방서 도화소방관파출소는 마포로 도심재개발 제1구역 제39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부 고시 제146호 1980. 5. 19. 사업계획 결정 되었으며, 사업계획 결정내용은 대지면적이 1,061㎡이고, 건폐율이 35% 용적율이 440%이며 건축계획

은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도심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 도화 소방관파출소 이전계획은 사업시행 자측과 관할 마포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할 사항으로서 사업이 시행되며 자동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의원

○ 질문내용 :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의 문제점

○ 답변내용

○ 우리구 관내에는 총 156건의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이의 완전개설에는 4,1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보상및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건설사업비 94:110억원, 95계획 71억원)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도로개설 공사시 2-3년내 집중투자하여 보상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효율적인 투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앞으로 투자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기간을 앞 당기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질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의원

○ 질문요지 :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의 문제점

○ 답변내용

1. 공공사업(도로개설공사등)시행에 따른 보상은 손실보상으로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

하는 것으로 모든 공공사업 보상비 책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를 둔 공특별 규정에 따라 정하며 공특별시행령 제2조의10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상, 면적, 획지상태, 가로상태, 교통시설등의 접근 정도 및 토지이용상황등을 고려하며, 보상비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 14개 감정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의뢰하고 같은 문제점이 있어 소유자에게 만족스럽 보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첫째, 피 보상자의 혈연, 지연, 직업등 일상생활의 유리한 조건상실, 장래 생활근거지의 정착계획등과 관련 직, 간접 정신적 고통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둘째,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갖는 애착심, 집착열등의 주관적 감정가치 및 장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주관적 가치 배제

셋째, 토지소유자와 기업자 합의해서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공특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법규적 사항임.

넷째, 토지소유자 요구대로 주관적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소수에게 과다보상이 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됨.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소관부서인 건설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여 주는 제도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하여 보상비 적정여부를 심의 및 재감정하여 보상비를 결정하며 수용위원회에 결정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질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의원

○ 질문요지 : 재건축 및 불량주택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내용

○ 먼저 재건축 규정 및 요건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4조의 2의 1항에 근거하여 아래요건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을 갖춘 5층이상 아파트 및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연립주택으로

-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도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근토지의 이용 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을 말하고

○ 단독주택 및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 지형여건,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포함 가능하고
-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및 서울특별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주택소유자 1세대만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먼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야 하고 이 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그 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재산증식을 위하여 타산에 맞을 경우 완전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 이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건설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법에서 세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하여 재건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재건축 결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수용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다고 이해됩니다.

- 불량주택재개발 지구지정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량주택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토지, 건축구조상,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 시에 전달하여 건설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결정을 받고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시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및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 제58조 1항에 의하면 조합원 1인은 주택 1세대만을 분양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내용 : 도시건설위원회 한천덕의원

○ 질문요지 :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 답변내용

○ 한천덕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24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구민회관 특별교부금 15억원과 증액된 보조금 8억원을 감안하면 실 예산은 94년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지방4대선거와 쓰레기종량제실시, 공무원인건비 상승등 필수 불가결한 경상비가 약 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어쩔 수 없이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서 전년도 보다 약 40억원을 줄일수 밖에 없었고 확보된 사업비도 신규 투자보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게되어 지역의 각종 투자사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예산에서 지역의 투자사업이 빠진 지역에 대하여는 차기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